

[별표 3의2] <개정 2009.11.2>

포상금의 지급기준(제30조제1항관련)

포상금 지급대상자	포상금액
1.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·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·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(이하 이 표에서 "신고자등"이라 한다	20만원 이하
2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·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·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	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가 조사·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(이하 이 표에서 "시가"라 한다)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
3.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	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4.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·가공·사용·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	관할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식육의소비자가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5.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·가공·포장·보관·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	30만원 이하
6.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	10만원 이하

비 고 :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신고·고발 또는 검거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한다.